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97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97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2488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12.

판결선고 2022. 11.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248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C(AA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는 청구취지와 같은 계약의 취소와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K의 증언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근무하였던 점’ 다음에 ‘K가 (주)V 등으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 관련 자문 용역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면서 이들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조직구성, 업무분장, 재해복구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 형식에 맞게 문서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재난관리와 관련한 자격을 보유하고 L이 수행한 용역이 이와 연관된 업무였다 하더라도, C이 이러한 업무를 오로지 K의 명의만을 빌려 자신이 전부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K 명의로 입금된 용역대금 자체가 C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K가 L 사업을 할 무렵 30대였으나 부모로부터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K가 얻은 소득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가계생활을 꾸려나가는 피고 앞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돈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의 성격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17행의 '이체된 사실' 다음에 '및 K가 L을 운영하면서 C의 도움으로 (주)V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흥관, 판사 윤동연

별지